

# 「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」

##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 요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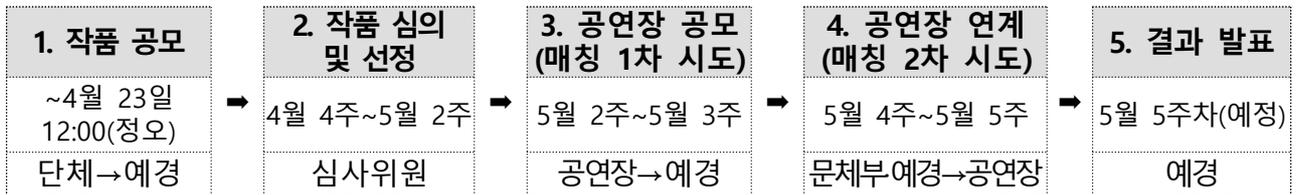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국 공연장을 활용하여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순수 공연예술 활성화 및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'2024년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'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, 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# □ 주요 추진방향

구분	주요내용
작품 선정 규모	-순수 공연예술 작품 총 40개 내외 ※ '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 공모사업(<2024 공연 예술 유통>, <2024 지역맞춤형 중소기업 콘텐츠 유통>)에서 작품이 선정된 단체는 지원 불가 *선정 후 사업 포기시에도 지원 불가
신청(공모) 분야	-4개 분야 : 클래식 음악, 연극, 무용, 국악 ※ 대중예술(게임·영화 수록곡 및 대중가요 연주 등 포함) 및 뮤지컬 제외, 퓨전형식(단순 장르 연계 복합공연 등) 지양 -단체당 최대 2개 작품 * 단체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
주요 지원조건	㉠'2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전막 공연·발표된 기 창작품 *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 공연, 전막 쇼케이스 공연도 인정 ㉡무료 초청티켓은 객석 수 10% 이내로 하며, 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필수 * KOPIS에서 티켓 판매수·판매액 공개 예정
작품 배정건수 (참여 공연장)	전국 문예회관 및 공공 공연장(서울포함)별 최대 4건 ※ 공연장은 자부담 5~20% 편성 필요(홍보비, 부대행사비 등) * 지역별 자부담 비율 : 인구감소지역(5%) < 非서울(10%) < 서울(20%)
국고보조 제한	2024년 5월 31일까지 공연장 매칭 불발시 작품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고 보조 불가
추진 절차	작품 공모 → 작품 심의·선정 → 공연장 공모 및 작품 배정(1차 시도) → 매칭 불발 작품 대상 공연장 연계 및 작품 배정(2차 시도) → 매칭 공연장 대상 보조금 교부 → 사업추진 → 성과보고·정산(공연장)

## □ 공모 개요

- (공모명)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
- (공모방향) 지역 내 다양한 공연장에 민간예술단체의 우수작품을 유통하여 공연장 가동률을 제고하고, 특히 순수 공연예술 분야 작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
- (지원기간) '24년 6월~12월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
- (지원대상) 민간 공연예술단체
  - \* '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 공모사업(<2024 공연예술 유통>, <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>)에서 작품이 선정된 단체는 본 사업 지원 불가
- (지원내용) 민간 공연예술단체 사업비 지원(단체 자부담 없음)
  - \*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의 매칭 이후 국고보조금은 공연장에게 교부됨
  - \*\* '24.5.31.까지 매칭 불발시 작품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고보조금 미지급
- (공모대상) 단체당 최대 2개 작품 지원신청 가능
  - \* 예산 편성시 '1개 공연장 2회 공연'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 작성
  - (장르) ▲클래식 음악(오페라, 실내악 중심, 갈라 콘서트 포함/아마추어 합창·개인 리사이틀 제외), ▲연극, ▲무용(현대·전통·발레), ▲국악(전통연희, 민요, 기악 등 포함)
    - \* 대중예술(게임·영화 수록곡 및 국내외 대중가요 연주 등 포함) 및 뮤지컬 제외, 퓨전형식(단순 장르 연계 복합공연 등) 지양
  - (조건) ㉠'2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전막 공연·발표된 기 창작품  
㉡무료 초청 티켓은 객석 수 10% 이내로 하며, 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필수(KOPIS에서 티켓 판매수·판매액 공개 예정)
    - \* 유료화된 전막 트리아아웃 공연, 전막 쇼케이스 공연도 인정
    - \*\* 총 자부담을 초과하는 매출액(티켓 판매액, 부가상품 판매, 후원금 등)은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(재투자) 제출 필수
- (선정절차) 우수작품 선정 후 2차례의 작품-공연장\* 매칭
  - \* 공연장은 자부담 5~20% 책정 필요(서울특별시 소재 공연장 20%, 행정안전부 지정 '인구감소지역 89곳' 5%, 나머지 지역 소재 공연장 10%)



※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공모 방법

○ (신청방법) [e나라도움\(www.gosims.go.kr\)](http://www.gosims.go.kr)

○ (신청기간) ~'24. 4. 23.(화) 12:00(정오)까지

- \*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(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- \*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·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
- \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권장
- \*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이용'

○ (신청서류) 신청서 포함 필수 및 추가 서류

- \* 추가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
필수 서류	<p>1. 공모신청서(붙임자료 포함) 1부 (양식 제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붙임자료: ①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</li> <li>②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/li> </ul> <p>2. 공연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중 1부 *고유번호증 제출 불가</p> <p>3. 공연단체의 동 사업 신청 공연 발표 실적('23년 12월 이전) 증빙자료 사본 각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연 크레딧 등 발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프로그램북, 리플렛 등), 파일(저용량 변환 후 제출) 등</li> </ul>
추가 서류	<p>4.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 (자유양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, 필수 제출</li> </ul> <p>5. 유료 공연 증빙자료 (자유양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막 트리아아웃 공연 또는 전막 쇼케이스 경우, 유료 공연 증빙 필수 제출(포스터_티켓 가격 명시, 티켓 예매 또는 정산 증빙자료 등)</li> </ul>

○ (심의기준) 예술성 및 완성도 높은 작품 선정·유통 기대

구분	세부항목	배점
작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술성 및 완성도(40)</li> <li>■ 공연작품의 파급 효과(10)</li> </ul>	50
수행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연진·스태프의 전문성(15)</li> <li>■ 공연단체 활동 실적(15)</li> </ul>	30
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산 계획 및 운영의 현실성·명확성(20)</li> </ul>	20
<b>총 계</b>		100

○ (결과안내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
○ (기타문의)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

- (이메일) [promokams3@gokams.or.kr](mailto:promokams3@gokams.or.kr)

\*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응대를 위하여 이메일 문의 및 응대 진행 예정

□ **유의사항** \* 미충족 시 심의 및 선정 등에서 제외

○ (의무사항)

- (공모사업 신청) 공연단체는 e-나라도움 시스템 필수 사용하여 공모 신청
  - \* 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 보조금 교부 신청, 집행 및 정산의 의무는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의 매칭 이후 공연장에게 있음
- (최소조건 충족) '2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전막 공연·발표된 기 창작작품
- (동의 서약서 제출) 사업 선정 후, '공연장 매칭 시 관련 정보제공' 및 '공연장 확보 불가 시 국고보조불가' 등 관련 동의 서약서 제출 필수(선정 이후 양식 배포)
- (서면 계약 체결)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
  - \* 단,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, 문체부 제정 <공연예술표준계약서(창작, 출연, 기술지원)>, <공연예술분야 표준대관계약서> 활용 권장
- (참여예술가 사례)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제공
  - \* 예산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제공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(공연정보 아카이빙) 공연 영상·사진, 디자인·홍보물, 공연인력정보(창작진·배우·스태프·협력기관 등) 제출
- (모니터링 참여)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참여·협조 필수

○ (지원신청 불가)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

구 분	내 용
신청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 공모사업(&lt;2024 공연예술 유통&gt;, &lt;2024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&gt;)에서 작품이 선정된 단체는 지원 불가</li> <li>- &lt;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&gt; 2개년 사업 선정 수행 공연단체 신청 불가</li> <li>- '24년에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작품(공연)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</li> <li>-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, 기획제작사, 개인예술가 등</li> <li>-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 작품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이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-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</li> <li>-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,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</li> <li>- 대중음악 공연 및 정기연주회,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</li> <li>-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-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 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3.01.27.개정)</li> <li>-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</li> <li>-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li>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-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공연장</li> <li>-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이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및 공연장</li> </ul>

○ (지원심의 불가)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

\* 심의·선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구 분	내 용
심의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미정산)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</li> <li>● (미반납)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</li> <li>● (부정수급)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예경으로 통보된 단체·개인</li> </ul>

구 분	내 용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저작권)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</li> <li>• (공연이력)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공연, 사업, 작품</li> <li>• <b>중복선정 불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위원회에서 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는 공연, 사업, 작품</li> <li>- 동일한 공연 작품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더라도, 최종적으로 중복 선정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복선정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부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* '24공연예술창작주체 타 기관 창작지원사업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일한 공연 사업, 작품은 중복 선정 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명	중복선정	세부내용	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* '24공연예술창작주체 타 기관 창작지원사업 등	불가	동일한 공연 사업, 작품은 중복 선정 불가
사업명	중복선정	세부내용					
타 기관(재단) 보조사업 * '24공연예술창작주체 타 기관 창작지원사업 등	불가	동일한 공연 사업, 작품은 중복 선정 불가					

○ (예산 편성)

목	세목	보조금	비고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 창제작 관련 전문인력 사례비</li> <li>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 등 전문인력 사례비</li> <li>- 공연 소품비(소모품)</li> <li>-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</li> </ul>	*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
	공공요금 및 제세(0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해보험료, 화재보험료, 행사보험료 등</li> </ul>	* 사업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
	임차료(0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습실(공연장 보유 연습실 제외) 대관비</li> <li>- 무대, 조명, 음향 장비, 필요 물품 임차비 등</li> <li>- 공연 유통(물품 운송 및 버스) 관련 임차료</li> </ul>	* 사무실 임차료 국비 편성 불가
	복리후생비(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술인 고용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</li> </ul>	* 예술인 고용 보험 필수 가입(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)
	일반용역비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대, 소품, 의상 제작비(업체 용역)</li> <li>- 촬영 및 영상 제작대행비(업체 용역)</li> <li>- 공연단체 공연사례 용역비 등</li> </ul>	* 선정 시, 본 사업의 공연영상, 사진 필수 제출
여비 (220)	국내여비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숙박비, 교통비</li> </ul>	* 공무원여비규정 기준

- '1개 공연장 2회 공연' 기준으로 작성하되, 작품 선정 및 공연장 매칭시 예산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추진비(다과,식대 등), 회의진행경비, 상근직원 인건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는 보조금으로 편성·집행 불가
- 공연을 위한 대관료 편성 불가(외부 연습실 대관비는 허용, 공연장 공간 대관비는 불가)
- 단체 대표의 경우, 주요 역할(연출, 안무, 예술감독 등)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,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
- 부가세의 경우, 과세자(일반과세자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·집행 불가하나, 면세자(간이과세자 포함)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·집행 가능
- \* 과세/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자로 간주(필수)

- 과세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공급가액으로 기재
-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필수
- \*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('23년 기준이므로, '24년 기준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)

총 사업비(자부담금+보조금)	회계검증수수료(원)
1억이상 2억미만	935,000
2억이상 3억미만	985,000
3억이상 4억미만	1,170,000
4억이상 5억미만	1,370,000
5억이상 6억미만	1,600,000
6억이상 7억미만	1,800,000
7억이상 8억미만	2,000,000